거창군
Geochang County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751호 2020. 5. 20.(수)

거창 후훈 거창

선결	기관의 장

고 시

제2020-54호 거창군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2
제2020-55호 거창군계획시설(시설:하수도) 실시계획인가 고시 ····· 5
제2020-57호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고시 ····· 7
제2020-60호 도로명주소 고시 ····· 19

공 고

제2020-735호 거창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공고 ····· 21

회 람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고시 제2020-54호

거창군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창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골프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하고,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군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거창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년 05월 14일

거 창 군 수

1. 거창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경미한 사항)

가. 체육시설(변경)

1) 골프장(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체육시설	골프장	신원면 덕산리 산13번지 일원	1,817,554	감)14,787	1,802,767	경상남도 고시 제2007-92호 (2007.03.29)	

■ 골프장 변경사유서

도면표기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체육시설	▪ 면적변경 - 1,817,554㎡→1,802,767㎡ [감) 14,787㎡]	• 신원저수지 편입 부지 제척

2. 거창군계획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산1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 명 칭 : 거창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일명:감악산골프장)

다. 사업규모(변경)

○ 당　초 : 1,817,554㎡

○ 변　경 : 1,802,767㎡ (감 14,787㎡)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군계획시설 (체육시설)	합　계	1,817,554	감)	14,787	1,802,767	100.0	100.0	
	체육시설 용지	389,025	감)	51,307	337,718	21.4	18.7	
	건축시설 용지	8,540	증)	625	9,165	0.5	0.5	
	공공시설 용지	94,318	감)	4,569	89,749	5.2	5.0	
	녹지 용지	1,325,671	증)	40,464	1,366,135	72.9	75.8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 성　명 : 코리아신탁(주) 대표이사 최익종

마. 사업기간(변경)

○ 당 초 : 2008. 03. 13. ~ 2019. 12. 31.

○ 변 경 : 2008. 03. 13. ~ 2020. 09.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참조

3. **관계도서** : 실음생략[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비치]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1,834,519	1,834,519	1,817,554	1,802,767					
1	신원면 덕산리	231	답	255	255	255	25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 국민은행	
2	신원면 덕산리	255	임	205	205	205	20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 국민은행	
3	신원면 덕산리	256	임	89	89	89	8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 국민은행	
4	신원면 덕산리	257	임	89	89	89	8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 국민은행	
5	신원면 덕산리	374	답	2,172	2,172	2,172	2,17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 국민은행	
6	신원면 덕산리	377	임	89	89	89	8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 국민은행	

7	신원면 덕산리	378	답	873	873	873	87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 국민은행	
8	신원면 덕산리	379	답	231	231	231	23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 국민은행	
9	신원면 덕산리	380	답	423	423	423	42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 국민은행	
10	신원면 덕산리	391	답	833	833	833	8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 국민은행	
11	신원면 덕산리	440	임	1,236	1,236	1,236	1,23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 국민은행	
12	신원면 덕산리	산13	임	1,811,055	1,811,055	1,794,090	1,794,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 국민은행	
13	신원면 덕산리	산13-12	임	750	750	750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 농어촌공사			
14	신원면 덕산리	산13-13	임	14,037	14,037	14,037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한국 농어촌공사			
15	신원면 덕산리	산59	임	2,182	2,182	2,182	2,18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 국민은행	

거창군 고시 제2020-55호

거창군계획시설(시설:하수도) 실시계획인가 고시

『위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시설:하수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4일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4-3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하수도)
   ○ 명 칭 : 위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3. 사업시행 규모 및 내용

종류	시설명	위 치	시 행 규 모(㎡)		최 초 결정일	비고
			결정면적	금회시행		
환경기초 시설	위천하수종말 처리장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04-3번지 일원	4,105	A=4,105㎡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100㎥/일	거창군 고시 제2008-43호 (2008.09.2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거창군수(수도사업소장)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3.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과 같음
7.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4,846	4,105					
1	위천면 남산리	104-3	잡	4,846	4,105		거창군			

거창군 고시 제2020 - 57호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고시

「관광진흥법」 제5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온천법 제10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거창군청 문화관광과에 비치된 관련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19일

거 창 군 수

1.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조서

가. 관광지명 : 가조온천 관광지

나. 위 치 :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일원

다. 지정면적 : 230,673.6㎡ (변경없음)

라. 사업기간 : 1993년 ~ 2030년

마.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바.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토지이용계획변경(㎡)		관광시설(동)		건축연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총 계	230,673.6	230,673.6	101	103	173,464	173,464	
공공편익시설지구	52,106.4	52,106.4	3	3	857	857	
숙 박 시 설 지 구	64,125.8	64,125.8	55	55	103,661	103,661	
상 가 시 설 지 구	30,136.4	30,136.4	39	40	47,074	47,074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	25,248.6	25.248.6	4	5	21,872	21,872	
기 타 시 설 지 구	59,056.4	59,056.4	-	-	-	-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지구의세분	위치	제한 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7	가조온천지구	관광 · 휴양	거창군 일부리 1340 일원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개발	230,673.6	-	230,673.6	2004.2.4	

2)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230,673.6	-	230,673.6	100.0	
계획관리지역	230,673.6	-	230,673.6	100.0	

3)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	지구의세분	위치	제한 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7	가조온천지구	관광 · 휴양	거창군 일부리 1340 일원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개발	230,673.6	-	230,673.6	2004.2.4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세분된 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

구 분	토지이용계획(㎡)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30,673.6	-	230,673.6	100.00	
Ⅰ.공공편익시설용지	52,106.4	-	52,106.4	22.6	
Ⅱ.숙 박 시 설 용 지	64,125.8	-	64,125.8	27.7	
Ⅲ.상 가 시 설 용 지	30,136.4	-	30,136.4	13.1	
Ⅳ.관광휴양오락시설용지	25,248.6	-	25,248.6	11.0	
Ⅲ.기 타 시 설 용 지	59,056.4	-	59,056.4	25.6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시설명	면 적 (㎡)		구성비 (%)	건축면적(㎡)		건축 연면적(㎡)		비고
			기 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30,673.6	230,673.6		44,829.0	44,829.0	173,464.0	173,464.0	
공공편익 시설		소 계	52,106.4	52,106.4		491.0	491.0	857.0	857.0	
		주차장	7,411.2	7,411.2		156.0	156.0	187.0	187.0	
		집수장 및 관리사무소	1,117.6	1,117.6		335.0	335.0	670.0	670.0	
		도로	43,577.6	43,577.6		-	-	-	-	
숙박시설		소계	64,125.8	64,125.8		24,983.0	24,983.0	103,661.0	103,661.0	
		호텔	6,265.5	-		2,192.0	-	12,494.0	-	
		여관	50,827.3	-		20,330.0	-	81,323.0	-	
		콘도미니엄	7,033.0	-		2,461.0	-	9,844.0	-	
		관광숙박시설	-	13,298.5		-	4,653.0	-	22,338.0	
		숙박시설	-	50,827.3		-	20,330.0	-	81,323.0	
상가시설		소계	30,136.4	30,136.4		11,990.0	11,990.0	47,074.0	47,074.0	
		일반상가	28,868.0	28,868.0		11,547.0	11,547.0	46,188.0	46,188.0	
		주유소	1,268.4	1,268.4		443.0	443.0	886.0	886.0	
관광 휴양 · 오락 시설	운동 오락 시설	소계	6,645.1	6,645.1		1,821.0	1,821.0	5,360.0	5,360.0	
		테니스장	1,441.0	1,441.0		-	-	-	-	
		종합위락센터	5,204.1	5,204.1		1,821.0	1,821.0	5,360.0	5,360.0	
	휴양 문화 시설	소계	18,603.5	18,603.5		5,544.0	5,544.0	16,512.0	16,512.0	
		온천장	10,969.4	10,969.4		5,484.0	5,484.0	16,452.0	16,452.0	
		공원	7,634.1	7,634.1		60.0	60.0	60.0	60.0	
기타시설		소계	59,056.4	59,056.4		-	-	-	-	
		녹지	2,203.8	2,203.8		-	-	-	-	
		하천	56,839.4	56,839.4		-	-	-	-	
		광천지	13.2	13.2		-	-	-	-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번 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30,673.6	-	230,673.6	-	-	-	230,673.6	-	230,673.6	-
1	1	8,325.8	-	8,325.8	합계			8,325.8	-	8,325.8	-
					1	1	가조면 일부리 1262	1,268.4	-	1,268.4	주유소
					2	2	가조면 일부리 1263	5,204.1	-	5,204.1	종합위락센터
					3	3	가조면 일부리 1264	1,291.0	-	1,291.0	주차장
					4	4	가조면 일부리 1265-1	562.3	-	562.3	녹지
	2	5,669.8	-	5,669.8	합계			5,669.8	-	5,669.8	
					1	1	가조면 일부리 1266	965.3	-	965.3	상가
					2	2	가조면 일부리 1267	936.4	-	936.4	상가
					3	3	가조면 일부리 1268	706.4	-	706.4	상가
					4	4	가조면 일부리1269	948.0	감)261.0	687.0	상가
					-	8	가조면 일부리1269-1	-	증)261.0	261.0	상가
					5	5	가조면 일부리 1270	921.0	-	921.0	상가
					6	6	가조면 일부리 1272	492.8	-	492.8	상가
					7	7	가조면 일부리 1271	699.9	-	699.9	녹지
1	3	6,009.1	-	6,009.1	합계			6,009.1	-	6,009.1	-
					1	1	가조면 일부리 1302	1,117.6			집수장 및 관리소
					2	2	가조면 일부리 1301	4,888.2			온천장
					3	3	가조면 일부리 1301-1	3.3			광천지
	4	7,033.0	-	7,033.0	합계			7,033.0	-	7,033.0	-
					1	1	가조면 일부리 1300	1,863.7	-	6,511.2	관광숙박시설
					5		가조면 일부리 1300-4	1,909.9			
					2		가조면 일부리 1300-1	179.7			
					3		가조면 일부리 1300-2	971.9			
					4		가조면 일부리 1300-3	1,586.0			
					6	2	가조면 일부리 1300-5 일원	521.8	-	521.8	단지내도로
	5	6,932.60	-	6,932.6	합계			6,932.6	-	6,932.6	
					1	1	가조면 일부리 1296일원	3,795.7	-	3,795.7	공원
					2	2	가조면 일부리 1298	1,695.9	-	1,695.9	상가
					3	3	가조면 일부리 1297	1,441.0	-	1,441.0	테니스장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번 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1	6	7,736.3	-	7,736.3	합계			7,736.3	-	7,736.3	-
					1	1	가조면 일부리 1274	1,259.9	-	1,259.9	주차장
					2	2	가조면 일부리 1275	6,256.5	-	6,256.5	관광숙박
					3	3	가조면 일부리 1276	210.9	-	210.9	녹지
	7	5,365.7	-	5,365.7	합계			5,365.7	-	5,365.7	-
					1	1	가조면 일부리 1279	1,137.5	-	1,137.5	숙박시설
					2	2	가조면 일부리 1280	1,203.0	-	1,203.0	숙박시설
					3	3	가조면 일부리 1281	1,256.5	-	1,256.5	숙박시설
					4	4	가조면 일부리 1282	1,408.0	-	1,408.0	숙박시설
					5	5	가조면 일부리 1277	360.7	-	360.7	녹지
					6	6	가조면 일부리 1281-1	3.3	-	3.3	광천지
	8	4,349.3	-	4,349.3	합계			4,349.3	-	4,349.3	-
					1	1	가조면 일부리 1295	656.1	-	656.1	상가
					2	2	가조면 일부리 1292	729.2	-	729.2	상가
					3	3	가조면 일부리 1291	721.1	-	721.1	상가
					4	4	가조면 일부리 1290	725.2	-	725.2	상가
					5	5	가조면 일부리 1293	784.9	-	784.9	상가
					6	6	가조면 일부리 1294	732.8	-	732.8	상가
	9	4,939.7	-	4,939.7	합계			4,939.7	-	4,939.7	-
					1	1	가조면 일부리 1288	701.0	-	701.0	숙박시설
					2	2	가조면 일부리 1287	709.2	-	709.2	숙박시설
					3	3	가조면 일부리 1284	694.8	-	694.8	숙박시설
					4	4	가조면 일부리 1283	724.2	-	724.2	숙박시설
					5	5	가조면 일부리 1285	709.8	-	709.8	숙박시설
					6	6	가조면 일부리 1286	698.5	-	698.5	숙박시설
					7	7	가조면 일부리 1289	702.2	-	702.2	숙박시설
	10	3,652.1	-	3,652.1	합계			3,652.1	-	3,652.1	-
					1	1	가조면 일부리 1347	698.5		698.5	상가
					2	2	가조면 일부리 1348	696.0		696.0	상가
					3	3	가조면 일부리 1349	699.8		699.8	상가
					4	4	가조면 일부리 1350	696.7		696.7	상가
					5	5	가조면 일부리 1346	701.7		701.7	상가
					6	6	가조면 일부리 1377	156.1		156.1	녹지
					7	7	가조면 일부리 1349-1	3.3		3.3	광천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번 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1	11	8,006.0	-	8,006.0	합계			8,006.0	-	8,006.0	-
					1	1	가조면 일부리 1342	1,145.0	-	1,145.0	숙박시설
					2	2	가조면 일부리 1343	1,001.8	-	1,001.8	숙박시설
					3	3	가조면 일부리 1344	977.1	-	977.1	숙박시설
					4	4	가조면 일부리 1345	981.6	-	981.6	숙박시설
					5	5	가조면 일부리 1351	972.2	-	972.2	숙박시설
					6	6	가조면 일부리 1352	982.1	-	982.1	숙박시설
					7	7	가조면 일부리 1353	973.1	-	973.1	숙박시설
					8	8	가조면 일부리 1354	973.1	-	973.1	숙박시설
	12	6,847.4	-	6,847.4	합계			6,847.4	-	6,847.4	-
					1	1	가조면 일부리 1355	960.8	-	960.8	숙박시설
					2	2	가조면 일부리 1356	873.9	-	873.9	숙박시설
					3	3	가조면 일부리 1357	796.8	-	796.8	숙박시설
					4	4	가조면 일부리 1358	742.1	-	742.1	숙박시설
					5	5	가조면 일부리 1359	905.9	-	905.9	숙박시설
					6	6	가조면 일부리 1360	869.4	-	869.4	숙박시설
					7	7	가조면 일부리 1361	858.6	-	858.6	숙박시설
					8	8	가조면 일부리 1362	839.9	-	839.9	숙박시설
	13	7,368.0	-	7,368.0	합계			7,368.0	-	7,368.0	-
					1	1	가조면 일부리 1363	802.5	-	802.5	숙박시설
					2	2	가조면 일부리 1364	808.4	-	808.4	숙박시설
					3	3	가조면 일부리 1365	784.1	-	784.1	숙박시설
					4	4	가조면 일부리 1366	795.1	-	795.1	숙박시설
					5	5	가조면 일부리 1367	963.3	-	963.3	숙박시설
					6	6	가조면 일부리 1368	800.1	-	800.1	숙박시설
					7	7	가조면 일부리 1369	808.8	-	808.8	숙박시설
					8	8	가조면 일부리 1370	808.4	-	808.4	숙박시설
					9	9	가조면 일부리 1371	797.3	-	797.3	숙박시설
	14	3,703.1	-	3,703.1	합계			3,703.1	-	3,703.1	-
					1	1	가조면 일부리 1372	876.2		876.2	숙박시설
					2	2	가조면 일부리 1373	901.1		901.1	숙박시설
					3	3	가조면 일부리 1374	918.5	증)44.0	962.5	숙박시설
					4	4	가조면 일부리 1375	1,007.3	감)44.0	963.3	숙박시설
	15	6,081.2	-	6,081.2	합계			6,081.2	-	6,081.2	-
					1	1	가조면 일부리 1341	6,081.2	감)3,040.8	3,040.4	온천장
					-	2	가조면 일부리 1341-1	-	증)3,040.8	3,040.8	온천장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번 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1	16	3,838.4	-	3,838.4	합계			3,838.4	-	3,838.4	-
					1	1	1340	3,838.4	-	3,838.4	공원
	17	2,318.4	-	2,318.4	합계			2,318.4	-	2,318.4	-
					1	1	1337	749.2	-	749.2	상가
					2	2	1339	751.5	-	751.5	상가
					3	3	1338	817.7	-	817.7	상가
	18	6,464.0	-	6,464.0	합계			6,464.0	-	6,464.0	-
					1	1	1332	892.6	-	892.6	상가
					2	2	1333	818.7	-	818.7	상가
					3	3	1334	824.8	-	824.8	상가
					4	4	1335	739.9	-	739.9	상가
					5	5	1336	835.7	-	835.7	상가
					6	6	1329	793.7	-	793.7	상가
					7	7	1330	800.1	-	800.1	상가
					8	8	1331	758.5	-	758.5	상가
	19	2,930.2	-	2,930.2	합계			2,930.2	-	2,930.2	-
					1	1	1328	2,930.2	-	2,930.2	주차장
	20	4,078.9	-	4,078.9	합계			4,078.9	-	4,078.9	-
					1	1	1324	673.1	-	673.1	상가
					2	2	1323	669.7	-	669.7	상가
					3	3	1322	664.5	-	664.5	상가
					4	4	1327	728.2	-	728.2	상가
					5	5	1326	669.6	-	669.6	상가
					6	6	1325	670.5	-	670.5	상가
					7	7	1325-1	3.3	-	3.3	광천지
	21	2,144.0	-	2,144.0	합계			2,144.0	-	2,144.0	-
					1	1	1321	1,930.1	-	1,930.1	주차장
					2	2	1385	213.9	-	213.9	녹지
	22	7,658.3	-	7,658.3	합계			7,658.3	-	7,658.3	-
					1	1	1308	916.4	-	916.4	숙박시설
					2	2	1309	880.5	-	880.5	숙박시설
					3	3	1310	976.0	-	976.0	숙박시설
					4	4	1311	700.7	-	700.7	상가
					5	5	1312	700.6	-	700.6	상가
					6	6	1313	723.9	-	723.9	상가
					7	7	1314	928.3	-	928.3	숙박시설
					8	8	1315	919.8	-	919.8	숙박시설
					9	9	1316	912.1	-	912.1	숙박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번 호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1	23	4,432.1	-	4,432.1	합계			4,432.1	-	4,432.1	-
					1	1	1317	1,129.4	-	1,129.4	숙박시설
					2	2	1318	1,133.7	-	1,133.7	숙박시설
					3	3	1319	1,096.1	-	1,096.1	숙박시설
					4	4	1320	1,072.9	-	1,072.9	상가
	24	4,373.2	-	4,373.2	합계			4,373.2	-	4,373.2	-
					1	1	1305	1,490.3	-	1,490.3	숙박시설
					2	2	1306	1,487.9	-	1,487.9	숙박시설
					3	3	1307	1,395.0	-	1,395.0	숙박시설
	도로							43,577.6	-	43,577.6	-
	하천							56,839.4	-	56,839.4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 공공편익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획지			
1	1	3 주차장	용도	허용용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별표 19에 의한 공공편익시설지구 내 설치가능 시설 중 주차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 이하
			용적률		2% 이하
			높 이		1층 이하
	3	1 집수장 및 관리사무소	용도	허용용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별표 19에 의한 공공편익시설지구 내 설치가능 시설 중 집수장 및 관리사무소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60% 이하
			높 이		2층 이하
	6	1 주차장	용도	허용용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별표 19에 의한 공공편익시설지구 내 설치가능 시설 중 주차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 이하
			용적률		2% 이하
			높 이		1층 이하
	19	1 주차장	용도	허용용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별표 19에 의한 공공편익시설지구 내 설치가능 시설 중 주차장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획지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 이하
			용적률		2% 이하
			높 이		1층 이하
	21	1 주차장	용도	허용용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별표 19에 의한 공공편익시설지구 내 설치가능 시설 중 주차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 이하
			용적률		2% 이하
			높 이		1층 이하

▮ 숙박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획지			기정	변경
1	6	2	용도	허용용도	·호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별표 19에 의한 숙박시설지구내 설치가능시설 중「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5호 나목 관광숙박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5%이하	
			용적률		· 200%이하	
			높 이		· 8층 이하	
	4	1	용도	허용용도	·콘도미니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별표 19에 의한 숙박시설지구내 설치가능시설 중「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5호 나목 관광숙박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5%이하	
			용적률		· 160%이하	
			높 이		· 4층 이하	
	7	1~4	용도	허용용도	·여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별표 19에 의한 숙박시설지구내 설치가능시설 중「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5호 가목 일반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9	1~7				
	11	1~8				
	12	1~8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13	1~9	건폐율		· 40%이하	
	14	1~4	용적률		· 180%이하	
	22	1~3, 7~9	높 이		· 4층 이하	
	23	1~3				
	24	1~3				

※ 4-1~6은 4-1로 합병되어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내용은 삭제

▌상가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획지			기정	변경
1	1	1	용도	허용용도	·주유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별표 19에 의한 상가시설지구내 설치가능시설 중「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단,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화약류 저장소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5%이하	
			용적률		· 80%이하	
			높 이		· 2층 이하	
	2	1~7	용도	허용용도	·상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별표 19에 의한 상가시설지구내 설치가능시설 중「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7호 판매시설(단, 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 · 가공 · 수리 등을 위한 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판매시설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제외)
	8	1~6				
	10	1~5				
	17	1~3				
	18	1~8				
	20	1~6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22	4~6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80%이하	
	23	4	높 이		· 4층 이하	

▌관광휴양 · 오락시설용지(운동 · 오락시설)(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획지			기정	변경
1	1	2 종합위락센터	용도	허용용도	· 종합위락센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별표 19에 의한 관광휴양 · 오락시설지구내 설치가능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 파목, 제13호 운동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35%이하	
			용적률		· 103%이하	
			높 이		· 3층 이하	
		3 테니스장	용도	허용용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별표 19에 의한 관광휴양 · 오락시설지구내 설치가능시설 중 테니스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관광휴양 · 오락시설용지(휴양 · 문화시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구	획지			
1	3	2	용도	허용용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별표 19에 의한 관광휴양 · 오락시설지구내 설치가능 시설 중 온천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15	1~2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 이		· 4층 이하

3. 온천 개발계획(변경) 조서

가. 온천 개발계획 면적(변경)

- 기정 : 225,300㎡, 변경 : 증)5,373.6㎡, **변경 후 : 230,673.6㎡**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	건축연면적(㎡)			동수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변경	변경 후	당초	변경
합계		225,300.0	증)5,373.6	230,673.6	100.0	37,830.0	증)135,634.0	173,464.0	65	103
공공편익시설지구	소계	67,050.0	감)14,943.6	52,106.4	22.6	960.0	감)103.0	857.0	10	3
	주차장	9,820.0	감)2,408.8	7,411.2	3.2	100.0	증)87.0	187.0	5	2
	화장실	260.0	감)260.0	-	-	80.0	감)80.0	-	2	-
	오수처리시설	2,090.0	감)2,090.0	-	-	-	-	-	-	-
	집수정및 관리사무소	4,980.0	감)3,862.4	1,117.6	0.5	780.0	감)110.0	670.0	3	1
	도로	49,900.0	감)6,322.4	43,577.6	18.9	-	-	-	-	-
숙박시설지구	소계	43,080.0	증)21,045.8	64,125.8	27.8	28,390.0	증)75,271.0	103,661.0	37	55
	호텔	14,320.0	감)14,320.0	-	-	12,640.0	감)12,640.0	-	2	-
	여관	28,760.0	감)28,760.0	-	-	15,750.0	감)15,750.0	-	35	-
	관광숙박	-	증)13,298.5	13,298.5	5.8	-	증)22,338.0	22,338.0	-	2
	일반숙박	-	증)50,827.3	50,827.3	22.0	-	증)81,323.0	81,323.0	-	53
상가시설지구	소계	25,190.0	증)4,946.4	30,136.4	13.0	8,000.0	증)39,074.0	47,074.0	16	40
	일반상가	15,880.0	증)12,988.0	28,868.0	12.5	4,200.0	증)41,988.0	46,188.0	13	39
	주유소	-	증)1,268.4	1,268.4	0.5	-	증)886.0	886.0	-	1
	온천장	9,310.0	감)9,310.0	-		3,800.0	감)3,800.0	-	3	-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	소계	20,370.0	증)4,878.6	25,248.6	11.0	480.0	증)21,392.0	21,872.0	2	5
	수영장	6,470.0	감)6,470.0	-	-	450.0	감)450.0	-	1	-
	피크닉장	5,880.0	감)5,880.0	-	-	30.0	감)30.0	-	1	-
	테니스장	4,240.0	감)2,799.0	1,441.0	0.6	-	-	-	-	-
	게이트볼장	3,780.0	감)3,780.0	-	-	-	-	-	-	-
	종합위락센터	-	증)5,204.1	5,204.1	2.3	-	증)5,360.0	5,360.0	-	1
	온천장	-	증)10,969.4	10,969.4	4.8	-	증)16,452.0	16,452.0	-	3
	공원	-	증)7,634.1	7,634.1	3.3	-	증)60.0	60.0	-	1
기타시설지구	소계	69,610.0	감)10,553.6	59,056.4	25.6	-	-	-	-	-
	녹지	18,390.0	감)16,186.2	2,203.8	1.0	-	-	-	-	-
	하천	51,220.0	증)5,619.4	56,839.4	24.6	-	-	-	-	-
	광천지	-	증)13.2	13.2	-	-	-	-	-	-

다. 토지이용계획(변경) 도면 : 게재생략(거창군청 문화관광과 비치)

4.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5. 관계서류 및 도서는 거창군 문화관광과(☎055-940-344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거창군 고시 제2020 - 60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5. 20.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010 등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2)에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1084-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010	20090702	20200520	행정구역명(수동면+남상면) 활용	
2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958-6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밭길 155	20090401	20200520	갈밭이라는 옛지명 반영	
3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산리 10-3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어인길 236-36	20090401	20200520	어인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4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421-13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원학길 400	20090401	20200520	원학이라는 옛지명이 반영된 도로	
5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산48-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장군봉1길 422-186	20090401	20200520	장군봉이라는 지명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6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1628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개화길 397-119	20090401	20200520	개화라는 자연마을 이름 반영	
7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완대리 1098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빼재로 1119-15	20091228	20200520	고제면에 위치한 빼재라는 지명을 반영한 도로	

거창군 공고 제2020 - 735호

거창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공고

거창군은「거창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군민생활의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5일

거 창 군 수

❑ 사 업 명 : 거창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 지원근거 : 『거창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00% 초과 대상 가구**

※ 지원제외 : **정부 1회 추경 및 경남형 지원대상**

- 정부 1회 추경 지원대상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
-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중위소득 100% 이하)

❍ 기 준 일 : **2020. 3. 29.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거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지원금액 : 가구별 200 ~ 500천원(1회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지원액	200	300	400	500

※ 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가구로 신청 시 지원

※ 국적미취득 결혼이민자가 주민등록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별도 신청으로 세대원 수에 포함하여 지원

❑ 신청 / 접수

❍ 신청기간 : 2020. 5. 27.(수) ~ 6. 26.(금) <30일간>

-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주차별, 5부제 분산 접수

주차	1~3주차 (5.27.~6.12.)					4~5주차 (6.15.~26)
요일	월	화	수	목	금	월~금
출생년도 끝자리	1,6	2,7	3,8	4,9	5,0	신청 못 한 모든 가구

※ 짝수년도는 오전, 홀수년도는 오후 신청접수

❍ 신 청 자 : 세대주 본인 또는 만 19세 이상 세대원, 대리인

※ 만 19세 미만 세대주인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대리 신청 가능

※ 학교 기숙사, 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시설(기관)장 대리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거창 한마음도서관(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 신청서, 동의서를 자택에서 작성
- 신분증 지참, 거창 한마음도서관(읍)·면사무소 방문 제출
- 추가제출
  - · 국적 미취득 결혼 이민자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 · 동거인 :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확인서), 3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신청서 미수령 및 분실 가구는 거창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거나 주소지 관할 거창 한마음도서관(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동불편 등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서를 대리로 제출할 수 있으며 거창사랑카드를 등기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급방식 : 선불카드(거창사랑카드)

❍ 사용지역 : 거창군 관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시불로 사용가능

❍ 사용기한 : 2020. 12. 31.까지(이후 사용 불가)

❍ 사용업종 : 대형종합소매소, 유흥 및 사행업, 온라인 쇼핑 등 사용불가

❖ **대형종합소매업** 중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복합 쇼핑몰** 및 **준대규모 점포** **※ 하나로마트 : 읍면지역은 사용가능**

❖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복권 발행 및 판매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기 타 : 면세점, 총포류·성인용품 판매점

❍ 재발급

- 훼손시에만 재발급 / 분실시 재발급 불가
- 카드수령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수령카드 해당은행에 방문하여 재발급

❑ 문 의 처 : 거창군 긴급재난지원 TF팀, 읍·면사무소

※ 거창군 긴급재난지원 TF팀 : 940-7950

읍 · 면	연락처	읍 면	연락처
거 창 읍	940-7220	주 상 면	940-7370
웅 양 면	940-7420	고 제 면	940-7470
북 상 면	940-7510	마 리 면	940-7620
남 상 면	940-7660	남 하 면	940-7720
신 원 면	940-7760	가 조 면	940-7810
가 북 면	940-7870	위 천 면	940-7570

붙임 신청서 1부. 끝.

거창형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 수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휴대전화	
	주소						전화번호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생 년 월 일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생 년 월 일
가족사항						

※ **<u>주민등록상 세대기준 가족사항 기재</u>(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원 기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지급조건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	
구비서류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서	
수령방법	선불카드	읍·면 방문 수령〔 〕 , 등기 수령〔 〕: 거동불편자 등 현장수령이 불가한 경우 한함
등기수령주소		
타 제도 지원여부	거창형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일 현재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거나 저소득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20.2.3.이후 생계지원 결정대상자), 코로나19 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을 받고있는 경우, 해당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하며, 중복지원의 경우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동의합니다.** **동의□**	
환수조치 확인	본인 및 전 가구원은 거창형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 내용과 다름이 판명될 때에는 지원 중지 및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관련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 거창형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수집하는 항목 :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취업상태에 관한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주민등록전산, 건강보험 자료 등 *개인정보 자료의 이용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및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 *개인정보 보유 : 긴급 재난지원금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까지 보유 및 폐기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난지원금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음 **동의□**	

본인(대리 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동의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거창형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 신청 경우)

거 창 군 수 귀 하

※ 대리 신청인에게 본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장 성명:** **(서명 또는 인)**

- 대리신청범위: 만19세미만 세대주인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대리신청 가능
  학교 기숙사, 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시설(기관)장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을 위해서는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